#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 1169 호 2019. 4. 11.(목)

고	시							
○ 울산광	}역시 북	_ 구 고시 제	<b>2</b> 019-67호[공	공유수면 점	용 · 사용허기	가 고시] …		2
○ 울산광	}역시 북	구 고시 제	2019-69호[5	E로명주소 ·	부여 고시]			3
○ 울산광	}역시 북	구 고시 제	2019-70호[5	E로명주소 :	폐지 고시]			5
<b>공</b> ○ 울산광			2019-425호[을					
안 내	공 ○ 긴	문으로 제출 급한 내용은	매주 목요일 출하여 주시. 은 사전에 햩 리 확인방법	기 바랍니디	<b></b>		주 수요일까	-지
	☞ 북	구 홈페이기	र](www.buk	gu.ulsan.kr	) → 구정소	:식 → 알림	마당 → 북	구공보
회				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홍보실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- 67호

## 공유수면 점용・사용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·사용을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4월 11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- 1. 허가 연월일 : 2019. 4. 4.
- 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인공구조물 설치[우수관로 매설, 진출입로 개설]
- 3. 점용·사용의 장소 : 산하동 932-60번지 및 산하동 932-61번지
- 4.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

가. 면 적 - 3m²

나. 기 간 - 2019. 04. 08. ~ 2023. 05. 31.

5. 점용・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기자이

나. 주 소 : 울산광역시 남구 신남로 38(신정동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- 69호

###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4월 11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23 외 5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		(별지참조)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**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**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O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**2019. 4. 11.**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# 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#### 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 공

#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	도로명주소	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
1	울산광역시 북구	가대동 788-1	울산광역시 북구	가대서 길 56-6	2019-04-11	가대동 서쪽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
2	울산광역시 북구	진장명촌지 구 68B 1-1L	울산광역시 북구	명촌로 9	2019-04-11	명촌동에 소재하는 도로로 법정동인 명촌동의 이름을 반영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8-02-29
3	울산광역시 북구	달천동 406	울산광역시 북구	달천만 석골길 44	2019-04-11	옛날 만석꾼이 살았던 곳이라는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 건의에 의해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8-02-29
4	울산광역시 북구	호계동 693-11	울산광역시 북구	호계 7길 23	2019-04-11	호계시장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20
5	울산광역시 북구	호계동 1046-9	울산광역시 북구	호계 7길 77	2019-04-11	호계시장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20
6	울산광역시 북구	호계동 693-6	울산광역시 북구	호계 7길 23-1	2019-04-11	호계시장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20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- 70호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4월 11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	
호계7길 73	호계동 478-6	2019. 4. 11	건축물멸실	
호계7길 23	호계동 693-11	2019. 4. 11	건축물멸실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**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**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**2019. 4. 11.**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# 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9 - 425호

##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4월 11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 1. 제정이유

○ 「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 하여 꽃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용어 정의 등(안 제1조 내지 제2조)
- 나. 꽃도시 조성사업의 범위 및 확산 지원
  - 1) 조성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  - 2) 확산 지원(안 제5조)
- 다.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(안 제6조 내지 제9조)
  - 1)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 제6조)
  - 2) 심의위원회 운영(안 제7조)

### 3. 관계법령

가.「지방자치법」제22조

나.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8조 별표 1

4. 조례안 : 따로 붙임

#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 농수산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라. 제출처
  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
  - 전화번호 : 052-241-8071, 팩스번호 : 052-241-8059

### 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정안은 울 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: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 :

○ 의 견 제 출

조례(안) 내용	찬 성 여 부		의	견	비고
	찬성	반대	7	선 	H 14

[붙임 1]

##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꽃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꽃도시 조성사업"이란 울산광역시 북구(이하 "구"라 한다)를 꽃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2. "꽃가꾸기"란 주택, 상가, 마을 등의 공간에 꽃을 심고 가꾸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꽃 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,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(이하 "구민" 이라 한다)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야한다.
- 제4조(꽃도시 조성사업의 범위) 꽃도시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꽃동산, 꽃거리, 꽃길 조성
  - 2. 꽃도시 조성·확산을 위한 문화행사
  - 3. 꽃도시 조성 캠페인, 콘테스트
  - 4. 그 밖에 꽃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5조(꽃도시 조성의 확산 지원)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 조를 통해 지역 내에 꽃도시 조성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.
  - 1.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꽃단지 조성

- 2. 구민대상 교육을 통한 꽃도시 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
- 3. 그 밖에 꽃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・법인・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③ 꽃가꾸기에 관한 콘테스트를 통해 선정된 공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- 제6조(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) ① 구청장은 꽃도시 조성사업 관련 주요 시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 시 조성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를 따른다.
  -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 - 1. 도시디자인, 공원녹지, 꽃도시 조성, 주택 등의 업무 담당과장 4명 이내
  - 2. 조경 관련 분야 전문가 3명 이내
  - 3.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
  - 4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명 이내
  -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제7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꽃도시조경 주사가 된다.
  -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

의 범위에서 「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.
  - 1. 꽃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
  - 2. 꽃도시 조성사업 시행계획
  - 3. 꽃가꾸기에 관한 콘테스트 등 심의
  - 4. 그 밖에 꽃도시 조성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